

#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6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3.

발의자 : 박주민 · 이찬열 · 위성곤  
이정미 · 김경진 · 황희  
김정우 · 정성호 · 박재호  
김두관 · 백혜련 · 김종대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5년 ‘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’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과 학교생활 및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각각 9.4%와 18.3%로 조사되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실제 차별·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·청소년의 인식 등에 관한 조사는 제외되어 있고,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역시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.

이에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·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,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

립·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5항).

##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교육에”를 “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·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인식 등에”로 한다.

제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·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-----.이 경우 제4조에 따른  
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 
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의 교육현  
황 및 일반 아동·청소년의 다문  
화가족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인  
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 
야 한다.